음악음향연구소 규정<제목개정 2017. 6. 7>

제 1 장 총 칙 (신설 2017. 6. 7)

- **제1조 (명칭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음악음향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라 칭한다.(개정 2017. 6. 7)
- 제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음악 및 음향의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 음악 및 음향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7. 6. 7)
- 제3조 (소재지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- **제4조 (사업)** 본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(개정 2017. 6. 7)
 - 1. 음악 및 음향의 학술적 연구
 - 2. 국내외 대학과의 학술 및 연주 교류
 - 3.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 및 음향 문화활동 및 교육사업
 - 4. 음악조기교육 및 특별교육
 - 5. 학술세미나 및 연주회 개최
 - 6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 (신설 2017. 6. 7)

- **제5조 (구성)**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(개정 2017. 6. 7)
 - 1. 소장 : 1명
 - 2. 부소장: 1명
 - 3. 운영위원 : 약간 명
 - 4. 연구위원 : 약간 명
- **제6조 (위촉)** 본 연구소의 소장, 부소장 및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.(개정 2015. 9. 1., 2017. 6. 7)
 - 1.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.
 - 2. 부소장,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.
- 제7조 (소장의 직능)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**제8조 (부소장의 직능)**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부재시에는 소장을 대신한다.(신설 2017. 6. 7) [본조신설 2017. 6. 7]

[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]

- 제9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 소장 부재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(신설 2017. 6. 7)
 - ③ 운영위원은 소장, 부소장 및 연구소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신설 2017. 6. 7)

[제8조에서 이동]

[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]

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(신설 2017. 6. 7)

- **제10조(회의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신설 2017. 6. 7)
 -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.(신설 2017. 6. 7)
 -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(신설 2017. 6. 7)
 - 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 - 2. 예산 및 결산
 - 3. 규정 개정 발의
 - 4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 - ④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(신설 2017. 6. 7)

[본조신설 2017. 6. 7]

[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]

제 4 장 재 정 (신설 2017. 6. 7)

- **제11조 (재정)**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(개정 2015.09.01)
 - 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 - 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 - 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 - 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[제9조에서 이동]

[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]

제 **5 장** 폐 소 (신설 2017. 6. 7)

제12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.)

[제10조에서 이동]

[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]

제 6 장 기 타 (신설 2017. 6. 7)

- 제13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 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 - 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다음해 3월말까지 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 - 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다음해 3월말까지
 - 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 - 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[제11조에서 이동]

[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]

제14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.)

[제12조에서 이동]

제15조 (운영세칙)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에 정한다.(조변경, 개정 2015.09.01.) [제13조에서 이동]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6. 7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